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나. 기초연금 지급 신청 대리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00.00.>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 우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 조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대리인)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 -----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 ----- ----- ----- . <단서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연 락 처	(044) 202 - 3678